

지정번호: 제 호

인증기관 지정서

- 기관명:
- 대표자 성명:
- 소재지:
- 인증업무의 범위:
- 유효기간:

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(제35조제1항) 및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5조제2항·제38조제4항(제58조)에 따라 유기식품등(무농약농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)의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